

부천시 역사사구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1998. 11. 18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구의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구성 : 위원장1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1)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2) 위원 가) 구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나) 부구청장, 사하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청 국장(과장) 등
 다) 개혁과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고문 : 구청장이 위촉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등)
- 4) 간사 : 총무국장

나. 위원회 기능

-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과제발굴 추진
- 2)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 3)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관계법령

- 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제정) 제10조

부산광역시사하구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구청장, 사하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청 국장(과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